



제318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**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**

**검 토 보 고 서**

2026. 3.

**자치행정위원회**

#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1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 근거
 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 -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 -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- 수동관광지 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해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,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를 도모하고자 함
  - 또한 캠핑장은 전문적 시설관리와 탄력적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,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) 위탁사무 내용

- 위탁재산의 유지관리
- 가족쉼터 이용객의 안전관리
- 가족쉼터 주변 환경정비(청소 등)
- 가족쉼터 시설사용료 징수 및 집행
- 가족쉼터 공공운영비(전기, 수도요금 등) 납부

## 3)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개요

시 설 명	가족쉼터 공공캠핑장
소 재 지	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237-1번지 일원
시 설 규 모	토지면적 : 8,115㎡ 숙박시설 : 일반야영장 20면, 자동차야영장 25면, 캐빈 2개 편의시설 : 관리실 1개소, 화장실 2개소, 개수대 2개소, 주차장 29면, 창고 1개소, 부대시설 1개소
사 업 내 용	공공캠핑장 사용자 예약 접수 및 사용료 징수, 시설물 유지 관리 등

-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#### 4) 민간위탁 기간

○ 2026. 7. 1. ~ 2031. 6. 30.(5년)

#### 5)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위탁방법 : 공개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- 관련근거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①항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(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)·용역(청소·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)계약을 체결할 때에 **계약이행의 전문성·기술성·창의성·예술성,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**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(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·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, 가격 경쟁 위주의 선정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수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#### 6)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본 사무는 별도의 신규 예산 소요는 없으며, 수탁자가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시는 위탁료를 세입으로 징수함. 다만 시설 보수정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필요 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
#### 7)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공공성 성격을 지닌 여가·휴식 서비스로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며,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원리 적용과 시의 지도·감독을 통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여 관리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구 분	검 토 의 견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「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하고 시의 관리·감독 및 위·수탁 운영기준을 통해 관리위탁 시 공공성과 운영 안정성 확보 가능함
경제적 효율성	○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시설 특성상 탄력적인 인력·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안전·위생관리 등 전문 업무를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행정비용과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캠핑장 특성 상 전문적 운영 역량과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시설로 직영 방식보다 관련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위·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정기적인 지도·점검 및 성과평가로 운영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·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정기 점검·보고 체계와 감사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관리·감독 확보됨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과 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 사례 축적을 통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역량이 검증되어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총 합 의 견	○ 수동관광지 가족쉼터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설로,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며, 수탁자의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「협상에 의한 계약」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## 8)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민간위탁 추진 시 위탁사무의 공공성 및 필요성, 수탁자 선정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시의 지도·감독 및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참고자료 : 붙임2
- 다. 관련부서 : 관광유산과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수동면 가족쉼터 공공캠핑장의 관리·운영 사무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 및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.
- 검토 결과, 공공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은 법령상 적용 가능한 범위에 있으며, 조례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. 특히 캠핑장은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크고, 안전·위생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전문적이고 현장 대응 중심의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,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인정됨.
- 다만, 시설 보수·정비 등 대규모 유지관리 비용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만큼, 5년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설투자 책임의 범위와 비용 분담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, 운영기준과 지도·점검 및 목표 평가 체계를 구체화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·감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**☑ 「지방자치법」**

-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**

-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

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총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## ☑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,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위탁기간의 변경
2.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3.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위탁기간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10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**제8조(수탁기관 선정)**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
## ☑ 「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**제9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※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운영 현황

■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현황

- 위 치 : 수동면 내방리 237-1번지 일원
- 관리운영 : 위탁운영
  - 수탁자 : 고로쇠마을운영위원회(대표자 : 오석배)
  - 위탁기간 : 2021. 7. 1. ~ 2026. 6. 30. ※ 의회 사후동의(2025.2.11.)
  - 위탁사무 : 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정비,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등 사무  
 ②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개보수, 사용료·이용료 징수·수납 등 시설관리 사무  
 ③ 지역주민,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무
- 시설현황 (시설면적 : 8,115㎡)

숙박시설	총 계		일반야영장	자동차야영장	캐빈	
		47면		20면	25면	2면
편의시설	관리실	화장실	개수대	주차장	창고	부대시설
	1개소	2개소	2개소	29면	1개소	1개소

- 기존 운영 현황
  - 2015.08. : 야영장 30면 등록 운영 - 민간 위탁 운영 (내방2리마을회)
  - 2016.02. : 2016년 경기도 공공캠핑장 조성사업 신청
  - 2018.12. : 자동차야영장 11면 및 편의시설 등 약 2,853㎡ 부지 추가조성
  - 2019.02. : 몽골문화촌 관리계획에 의한 운영 중단
  - 2020.08. : 여름철 수동계곡 행락객들을 야영장 부지 주차장 활용 및 화장실 개방
  - 2021.03. : 야영장 변경 등록(20면 → 31면)
  - 2022.11. : 가족쉼터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(계약금 : 20,390천원 / 90일)
  - 2022.12. : 관리위·수탁 변경 계약 체결(면적 : 5,199㎡ → 8,115㎡ /  
 편의시설 : 화장실 1개소 → 화장실 2개소, 창고 1개소, 부대시설 1개소)
  - 2023.02. : 가족쉼터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
  - 2023.03. : 야영장 변경 등록(31면 → 45면)
  - 2023.04. : 가족쉼터 시설개선공사 예산 확보(2023년 1회추경, 500백만원)
  - 2023.05. : 가족쉼터 시설개선공사 착공

- 2023.08. : 가족쉼터 시설개선공사 준공
- 2023.11. : 야영장 변경 등록  
(야영시설 : 일반야영장 34면 → 20면, 자동차야영장 11면 → 25면,  
편의시설 : 개수대 1개소 → 개수대 2개소, 주차장 37면 → 주차장 29면)
- 2024.06. : 가족쉼터 공공캠핑장 사무실 정비공사 준공